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,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
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심 사 보 고 서

2021. 12. 21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대상안건

의안번호	제출자	의안명
제438호	정선희 의원 외 7명	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439호	정선희 의원 외 6명	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나. 발의일자: 2021년 12월 8일

다. 회부일자: 2021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: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2. 1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선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 시행)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고,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등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 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인용 조문 반영 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
 - ⇒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102조, 제103조
 - 정책지원관의 배치, 직무범위, 지휘·감독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 - 사무국장 업무분장 사무 추가(안 제3조)
 -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규정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이 전부개정(2022.1.13. 시행)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먼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5조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 바, 개정 법 제41조에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게 한 것에 따른 조치임.
-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.

현 행 법	개 정 법
<p><신 설></p> <p>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</p>	<p>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</p> <p>① <u>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~ ③ 현행과 같음</p>

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

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1. 별정직공무원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

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- | |
|--|
| <p>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
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</p> <p>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
공무원</p> |
|--|

○ 다음으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」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에 “사무국 인사위원회 운영, 인사제도 관리,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”과 “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하였음.

이는 개정 법과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2022.1.13. 시행)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임.

-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5조 제2항제6호에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를 정한 것임.

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도입하고, 분장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정선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12월 8일

발의자: 정선희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조문 반영 (안 제1조)
- 나. 정책지원관의 배치, 직무범위, 지휘·감독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)
- 다.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”로, “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”를 “정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의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”으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
2.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
3.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
4.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·조사의 지원
5.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
6. 법 제52조에 따른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직무) ① <u>의회의</u>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② 사무국은 <u>의장</u>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사무국장은 <u>의장</u>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 <u>정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직무) ①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총괄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·② (현행과</p>

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<신 설>

같음)

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

2.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

3.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지원

4.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·조사의 지원

5.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

6. 법 제52조에 따른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

<p><u>제5조</u> · <u>제6조</u> (생략)</p>	<p>③ <u>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</p> <p><u>제6조</u> · <u>제7조</u> (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정선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12월 8일

발의자: 정선희 의원 외 6명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2.1.13. 시행)으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가 일부개정되어,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국장 업무분장 사무 추가(안 제3조)

나.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규정(안 제5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6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소속위원회”를 “의사진행과 관련된 소속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사무국 인사위원회 운영, 인사제도 관리,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
15.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② 정책지원관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5조2항에서 정한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
2. 의원의 조례안 작성

3.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작성
4. 토론회, 공청회, 세미나 등 운영 및 지원
5. 주민·전문가 의견수렴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1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」 제7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사무국 인사위원회 운영, 인사제도 관리,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</p> <p>15.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16. (현행 제14호와 같음)</p>
<p>제4조(전문위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결의시</p>	<p>제4조(전문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
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
제공

4. (생략)
5.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
간담회 등 운영
6.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
관한 사항

<신설>

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6. ----- 의사진행과 관련된
소속위원회 -----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
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
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
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
다.

② 정책지원관은 「서울특별시
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
례」 제5조2항에서 정한 사무 외
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
다.

1.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
에 대한 사항
2. 의원의 조례안 작성
3.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작
성
4. 토론회, 공청회, 세미나 등 운
영 및 지원
5. 주민·전문가 의견수렴